

##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14일	
신청인	사업장 명칭			대표자 성명			
	주소						
	전화		팩스		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		
심사종류	최초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		갱신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		중간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		임시인증심사 <input type="checkbox"/>
심사사유 ※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							
주사무소	총인원		명		사무소명:		명
	부서		개		사무소명:		명
					사무소명:		명
					사무소명:		명
운항선박의 종류	여객선		척		고속여객선		척
	산적화물선		척		유조선		척
	가스운반선		척		이동식해양구조물		척
				고속화물선		척	
				화학제품운반선		척	
				그 밖의 화물선		척	
안전관리적합증서 유효일				심사희망일 및 장소			
선종별 선적국		※선박의 기국과 선박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					

「해사안전법」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 : )

**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** 귀하

첨부서류	<p>1. 공통 제출서류: 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「해사안전법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해사안전법」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. 개별 제출서류</p> <p>가.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</p> <p>1)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</p> <p>2) 사업개요·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</p> <p>3)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</p> <p>나.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: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</p> <p>다.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</p> <p>1)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</p> <p>2)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(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	수수료
		<p>○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: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</p> <p>○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: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</p>

### 처리절차

